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805

발의연월일: 2022. 12. 8.

발 의 자:주철현·홍정민·민형배

신정훈 • 이원택 • 김홍걸

위성곤 · 송재호 · 김남국

김승남 · 이용우 · 이용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역관리청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 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 시설"이라 함)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은 해양환경공단에의 위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이 아닌 보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의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도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과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절차규정 등을 신설함으로 써 보다 효율적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을 통한 해양오염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신설, 제115

조제3항).

법률 제 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제38조제1항"을 "제38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해역관리청은"을 "해역관리청 및 제3항에 따라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으로, "관리대장("을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관리하여야"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재사항 및 보존기간"을 "기재사항 및 통보절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제3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로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자 하는 자(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제33조에 따 른 신고를 한 후에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장제4절에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 ①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적 정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2.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수탁받지 아 니할 것
- 3. 그 밖에 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②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오염물질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오염수를 해양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2.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오염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③ 오염물질저장시설에서 유수분리된 배출수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 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8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①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의 권리·

-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②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하여 제38조의2 부터 제38조의4까지의 규정(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임차인을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로 본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제3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완료하여야한다.
- ④ 제7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 및 제2항에 규정에 따른 임대차관계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 제38조의4(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2. 1년에 2회 이상 시설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 3. 시설의 정지기간 중에 시설을 운영한 경우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7. 신고 후 1년 이내에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15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38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소유자(설치·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임차인을 말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
|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① 선 |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① |
| 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 | |
| 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 | |
| 하는 오염물질 중 해양수산부 | |
| 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다음 각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에게 수거・처리하게 하여야 | |
| 한다. | |
| 1. <u>제38조제1항</u> 의 규정에 따른 | 1. 제38조제1항 및 제3항 |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 | |
| 운영자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38조(오염물질저장시설) ① (생 | 제38조(오염물질저장시설) ① (현 |
| 략) | 행과 같음) |
| ②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저장 | ② 해역관리청 및 제3항에 따 |
| 시설에 반입·반출되는 오염물 | 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ㆍ |
| 질의 <u>관리대장(</u> 이하 "오염물질 | <u> 운영하는 자는</u> |
|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u>작성ㆍ</u> | |
| <u>관리하여야</u> 한다. 이 경우 오염 |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 |
| 물질관리대장의 <u>기재사항 및</u> | <u>한다.</u> |
| <u>보존기간</u> 등에 관하여 필요한 | <u>작성하</u> |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 물질저장시설의 세부적인 설치 ·운영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한다.

<신 설>

| 여 | 해양 | ᅣ 경찰 | 청장 | 에게 | 통년 | 보하여 |
|----|----|---------------|----|----|----|-----|
| 야- | | | | | | |
| | | - <u>기재</u> / | 사항 | 및 | 통보 | 절차- |
| | | | | | | |

③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로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운 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오염 물질저장시설 운영자"라 한다) 는 제33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에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u>4</u> | 제1항 | 및 | 제3항- | |
|----------|-----|---|------|------|
| | | | | |
| | | | | |

제38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 ①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

 영기준에 따라 오염물질저장

 시설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

 이 없도록 할 것
- 2.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

<u>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u> <u>오염물질을 처리하거나 그</u> 처리를 수탁받지 아니할 것

- 3. 그 밖에 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②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오염물질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오염수를 해양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 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2.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오염수 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 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 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③ 오염물질저장시설에서 유수 분리된 배출수를 「물환경보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 같은 조 제17호에 따

<신 설>

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의 처리절차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8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①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②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하여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의 규정(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임차인을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로 본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염 물질저장시설 운영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 내에 제33조에 따른 변경신고 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④제71조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따른승계및제2항에규정에따른임대차관계에있

<신 설>

어 이를 준용한다.

제38조의4(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정지 또는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 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 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2. 1년에 2회 이상 시설의 운영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 3. 시설의 정지기간 중에 시설을 운영한 경우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

제115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ㅈ · ② (생 략)

③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제116조에 따라 해양환경 감시원으로 지정된 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시설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 를 한 경우 |
|---------------------------|
| 5.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사 |
| <u>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
| 6.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 |
| 무를 위반한 경우 |
| <u>7. 신고 후 1년 이내에 시설을</u> |
|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
|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 |
| 여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 |
|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 |
| 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 |
| 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제115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
| · ② (현행과 같음) |
| ③ |
| |
| |
| |
| |
| |
| |
| |
| |

2. (생략)

④ ~ ⑦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